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3,619,463	10,308,584
일반회계		286,994,453	8,609,834
특별회계		56,625,010	1,698,750
	공기업특별회계	49,149,722	1,474,4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955,390	928,66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194,332	545,830
	기타특별회계	7,475,288	224,259
	주택사업특별회계	19,202	5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26,964	42,809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77,626	2,32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02,000	24,060
	공업단지특별회계	825,000	24,75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50,600	19,5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1,829	2,155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1,067	32
	기반시설특별회계	41,400	1,2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559,600	106,788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67,27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